

문서번호	생활보건과-7866
결재일자	2013.4.1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생활보건정책팀장	생활보건과장	보건정책관



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

2013. 4

복지건강실
(생활보건과)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2013년 공중화장실 관련 보조금 지원계획

자치구의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, 여성변기 확충사업,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화장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개방화장실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의 지급)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-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(관리운영비등의 지원)
-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(지급대상사업 및 보조율)

II 2012년 지원실적

- 민간 개방화장실
 - 대상 : 25개구 890개소
 - 지원금액 : 305,268천원
- 여성변기 확충사업
 - 대상 : 5개구 13개소(성동5, 동대문3, 마포2, 송파2, 구로1)
 - 지원금액 : 211,000천원
- 무인자동공중화장실
 - 대상 : 9개구 23개소
 - 지원금액 : 19,850천원

III

2013. 보조금 지원 기준

- 민간 개방화장실
 -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(관리운영비등의 지원)
 - 개방시간, 대·소 변기수, 시설 및 청소상태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, 중, 하 구분 차등 지급
- 여성 변기 확충 : 해당 자치구 예산 편성액 (시비·구비 1:1) 이내 지원
 - 지원한도 : 「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」 (별표1)
 - 개소 당 최대 1억원 이내
 - 해당 자치구 예산 편성액 이내 지원
- 무인자동공중화장실 : 2014년부터 지원 중단
 - 수선유지비 : 개소 당 최대 1백만원 이내
 - 해당 자치구 예산 편성액 이내 지원
 - 철거지원비 : 예산 범위 내 지원(자치구 예산 포함)
 - 단, 소요조회 후 철거 희망 자치구에 한해 수선비 대신 철거예산 지원

IV

보조금 지원계획

< 민간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지원 >

- 예산액 : 500,000천원
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
 - 「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」 에서 정한 산정근거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실태 조사 후 점수로 환산 지원금액 결정
 - 공중화장실 신축이 어려운 도심 등의 신규지정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액 산정 시 고려

□ 시비보조금 산정

- 관광 특구내 개방화장실 69개소 중 59개소 지원예정 : 전통시장 포함
 - 관광특구 내 지원 금액
 - 월4,300천원(빌딩: 22개소, 음식점 : 11개소, 전통시장26)
 - ※ 2013년도 지원 금액 교부 시 시장 상가는 제외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이중 전통(재래)시장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원 예정
- 「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」에서 정한 산정 근거에 의해 지원금액 결정
 - 시비보조금 산정기준(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)
 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의해 ‘우선 적용범위 대상’ 제외
 - 시장, 상가를 제외하여 신청한 자치구와 형평성 고려 지원금 교부
 - 자치구 민간개방화장실 시비요구액 중 제외대상 선별하여 산정

□ 세부 지원 내역 : ‘붙임’ 참조

- 지원 대상 : 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 후 지원 신청

(개소)

구 분	계	빌딩	음식점	상가·시장	기타 (병원 등)	주유소
총 계	1,208	568	95	220	139	186
시비지원	773	559	93	67	54	-
제외	435	9	2	153	85	186

- 금액 산정
 - 자치구 신청금액 대비 제외 대상 선별 금액 산정
- 교부 결정 금액 : 499,740천원
 - 자치구 요청 : 78,500천원
 - 산출금액 : 66,580천원
 - 결정액(월) : 41,645천원(제외대상 산정 후)

※ 우선 적용범위 대상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, 임시시장, 상점가, 전문상가 단지
(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복합쇼핑몰 등)
- 철도시설 중 역 시설 및 도시철도 시설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, 충전소

< 공공용시설 >

- 문화 및 집회시설 : 집회장(예식장, 공회당),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문화관 등)
- 의료시설 :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등)
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: 학교, 교육원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, 노인사회복지 및
근로복지시설
- 체육시설, 공연장 등

※ 다만, 자치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

□ 지원방법

○ 시 → 자치구 교부

- 조례가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자치구에서 민간개방화장실 실태 조사 후 산출한 관리운영비 요청 ⇒ 예산 범위내 자치구에 지원

○ 자치구 →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

- 시 보조금과 자치구 예산을 각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

※ 개방화장실 지원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사회적기업 생산 물품 등을 지원 권고

<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>

예산액 : 250,000천원

지원기준

- 여성변기가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증·개축, 시설개선 또는 신축이 필요한 자치구 공중화장실 대상
 - 남녀변기수 비율 1:1이상(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)
 - 여성편의시설 : 리필 시트지, 기저귀 교환대, 유아용 보조의자
- 다중이용시설, 관광지, 공원, 시민체육시설 등 이용 인원이 많고 개선 시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우선 지원
- 기타 사업추진 가능성, 사업효과 등 고려
- ※ 재개발 계획 등이 확정되어 철거 예정인 공중화장실은 제외

지원방법

- 사업추진 주체 : 자치구청장(보조비율 : 시비50%, 자치구 50%)
- 시 → 자치구
 - 수요조사 결과 구비 확보 자치구 시비보조금(50%) 교부
- 자치구 → 다중이용시설, 관광지, 공원, 체육시설 등 여성변기 확충
 - 사업계획 대상 조사 → 계획 확정 → 사업비 신청(자치구) → 사업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지원(시)→ 사업추진 및 정산(자치구)

세부 지원내용

- 지원대상
 - 2012년 예산소요조회 결과 신청한 자치구(성북, 양천, 서초)에 지원 예정이 있으나 2013년 현재 예산이 편성된 양천구와 2013년 소요조회 결과 추가 신청한(마포, 송파)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

- 자치구 사정상 2013년 추경 반영 예정인 자치구(성북, 서초)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및 반영 여부에 따라 잔여 금액에 대해 예산범위 내 지원예정

○ 교부 결정 금액 : 180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구분	화장실 명	소재지	건축 면적 (㎡)	교 부 결정액	신청금액		시설개선 세부내역
					시비	구비확보	
계			80.00	180,000	180,000	335,000	총 10개 확충
양천구	신월근린공 원 공중화장실	양천구 신월7동 987-2	33.05	100,000	100,000	125,000	< 화장실 신축 > (여성변기 확충 등) ◦ 여자 화장실 변기 확충 (현재 2개소 ⇒ 7개소) ◦ 다목적 화장실 (장애인, 가족) 확보 (현재 1개 ⇒ 남·여각 1개)
마포구	망원유수지 공중화장실	마포구 망원동 450-2		10,000	10,000	10,000	◦ 여성변기확충 1개 ◦ 시설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
송파구	계			70,000	70,000	200,000	
	동 주민센터 여성변기 확충 및 개선	석촌동 265 외	184	20,000	20,000	150,000	◦ 여성 변기수 확충 및 개선 (현재 4개소 ⇒ 6개소)
	공원 여성 변기수 확충 및 개선	오금동 6 (백토공원내)	41	30,000	30,000	30,000	◦ 여성변기수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(현재 2개소 ⇒ 3개소)
가락동 37 (가락공원내)		31	20,000	20,000	20,000	◦ 여성변기수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(현재 2개소 ⇒ 3개소)	

< 무인자동화장실 유지관리 >

예산액 : 24,000천원

현황: 9개구 22개소

구분	계	종로	동대문	서대문	마포	강서	영등포	관악	서초	강남	비고
개소수	22	6	1	7	1	2	1	1	1	2	

지원기준

- 지원방향 : 고장시 신속한 수선 유지비 및 노후 화장실 철거비용 지원
 - 교부예정 : 2013. 5월 중
 - 소요 조회 실시 : 2013. 4월(철거비 지원 등)
 -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 또는 철거비용 지원
(자치구 요청 시 예산범위 내)

세부 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총 9개 구청 22개소
 - 자치구 수선유지비 요청시 지원금액 : 개소당 100만원 이내
 - 소요조회 결과 철거비 요청시 지원 금액 변동 가능

지원방법

- 수선 및 철거대상 소요 조회(예산금액파악) → 교부금신청 → 교부금 결정 및 지원 → 교부 → 정산

V

행정사항

민간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 지원

- 2013년 민간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·상가 제외 교부
(단,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)

- 민간개방화장실 중 관광특구 내 개방 화장실에 보조금 중단 여부에 대하여는 관광정책과, 관광특구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도부터 제외 검토
- 관광특구내 민간개방화장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자치구에 개선요청
- 공중화장실 점검
 - 점검 : 년 2회(4~6월, 10~11월)
 - 화장실 문화시민연대 실버봉사대 활용 표본 점검
- 민간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수시점검
 - 점검주체 : 자치구청
 - 점검횟수 :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 (월1회 권장)
 - 점검사항
 - 안내표지판, 시설관리, 청소, 편의용품 비치여부 점검
 - 개방화장실 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의견 수렴 등

□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

- 각 자치구 여성변기 확충사업 소요 조회
 -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계획서 제출 : 자치구
 - 상반기 금액 확정 및 하반기 소요조회(구비 확보 여부 포함)

□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관리방안

- 미 철거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에 대한 자체관리 방안수립 제출 : 자치구
 - 주변상황, 이용 인원, 노후정도, 고장율 등을 검토하여 존치, 철거 등 판단
 - 기타 시민편의 등을 위한 자체방안 강구 등
- 관리·운영 강화
 - 위탁화장실 : 자치구 직영으로 전환 권고
 - 점검횟수 확대 : 2회 점검(오전, 오후) → 3회 이상(아침, 점심, 저녁) 청소
 - 화장실 관리책임제 실시 : 화장실관리자의 부서, 연락처 등 명확히

-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작성 제출 : 자치구
 - 카드작성 : 9개 자치구 22개소
- 무인자동 공중화장실 실태점검에 따른 자치구 철거 권고 : 2013년 4월 중
- 철거 대상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수선비 대신 철거비용 보조 : 서울시(예산과 협의) → 자치구
- 철거의사가 있는 자치구 예산지원 및 향후 수선비 지원 중단
- 실태조사결과 자치구 존치를 원하는 무인자동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수선 유지비 지원 중단(2014년부터) - 자치구 자체예산 사업 전환

- 붙임 : 1)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금액
 2)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
 3) 2013년 민간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현황 및 지원내역
 4) 2013년 민간개방화장실 지정·운영 업무처리요령
 5) 2013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구별 교부금액(월별)
 6) 2013년 상반기 여성변기 확충 수요조사 결과
 7)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조금 신청서식
 8)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관리카드. 끝.